군포도시공사 제8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2022년 1월 5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6호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'군포로339(부곡동)'를 '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(부곡동)' 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안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군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 **군포로 339(부곡동)**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군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	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---------- **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(부곡동)**----------.